

제 6 장 정부조달

제 6.1 조 적용범위

1. 정부조달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「정부조달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」(이하 “GPA”라 한다)에 의하여 규율된다.

2. 당사국들은 각 당사국의 정부조달 제도에 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정부조달 시장의 추가적인 자유화 및 상호 개방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위원회에서 협력할 것에 합의한다.

제 6.2 조 정보교환

정부조달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당사국들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, 정부조달 분야의 규칙 및 규정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책임질 접촉선을 부속서 XIII에 명시한다.

제 6.3 조 추가 협상

1. GPA의 개정을 목표로 하는 협상의 틀에서 각 당사국의 정부조달 시장의 추가적 자유화에 대한 당사국들 간의 양자 협상이 종결되는 때에, 추가적 자유화와 관련이 있는 한 GPA의 주요 부분을 개정하는 협정의 규정을 포함하여, 그러한 자유화는 이 협정에 포함된다. 공동위원회는 이러한 양자 협상이 종결된 후 3월 이내에 이러한 취지의 결정을 한다. 이러한 결정은 당사국들의 비준 또는 수락을 조건으로 한다.

2. 이 협정이 발효된 후, 당사국이 비당사국에게 자국의 정부조달 시장에서의

접근에 관한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, 그 당사국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다른 당사국에게 이러한 혜택의 확대 가능성에 관한 협상을 개시할 것에 합의한다.